대한수사과학지 제1권 제1호(창간호)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Vol. 1, No. 1 (2006) p. 11～30

변사체 발생실태 및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설문 분석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조두원*, 채종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and Questionnaire for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f Police

Doo Won Cho*, Jong Min Chae
*Daegu Jungbu Police Station,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The preliminary investigative activities by the police officer play a critical role in identifying the cause of death in unnatural death investigations. The failure to secure the crime scene leads to the destruction of significant evidence, which results in the difficulty or impossibility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In order to prevent this jeopardizing crucial evidence,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he scene, this research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questionnaires of 300 police first responders and 100 detectives. As a result, it was disclos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first responders to fail to ensure scene security, scene observation, and canvass interviews. Besides, when medical personnel have no choice but to contaminate the crime scene in order to save live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take photos and to take proper actions before they enter the scene. The importance of scene-control educatio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order to prevent media from entering and destroying the evidence. Through research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which occurred in Kyongbook Province for last five years, the statistics regarding a few different types of death were analyzed as follows. Evidence that homicide, suicide, accidental death, and disaster death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take multilateral policies to reduce them, and for police to reinforce their investigative skills. Further, the insufficient number of autopsy facilities and forensic pathologists, only 13% of the deceased (1,237 cases) have had an autopsy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for last five years. The other, 87.3% (8,496 cases) of the deceased, were handled through simple postmortem examin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percentage is

Corresponding author : Jong Min Chae, M.D., Ph.D.
Tel : 053-420-4885, Fax : 053-422-4712
jmchae@knu.ac.kr

that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not revealing the cause of unjust deat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nish police agency with the reasonable amount of funding for autopsies and maintaining enough forensic pathologists.

Keywords :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questionnaire, police, unnatural death

Ⅰ. 서 론

현대사회는 복잡 다단하다. 이에 편승하여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병사, 재해사, 자살, 타살, 사고사 등 죽음의 유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사망의 원인이 명백한 병사(자연사)를 제외하고는 그 죽음의(변사자) 현장에는 항상 경찰이 있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밝히고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하고 나아가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출동 조치에 임하고 있다. 즉, 민주사회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하지만, 최근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재해사, 사고사 등의 발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범죄양상도 점점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고, 고도 정보화 추세의 사회구조는 각종 신종 수법범죄를 양산하고 있어 기존 수사기법을 이용한 사건 조기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옹호, 적법절차 준수, 증거에 의한 유죄판결이 강조되고 나아가 형사재판의 공판 중심주의가 시행되면 수사환경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고 그럴수록 경찰 과학수사는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치안현실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과학수사요원을 양성하며 수사 경과제를 시행하는 등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사체가 발생되면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 공의에게 1차 사체에 대한 외부검사를 의뢰하는 등 현장 초동조치에 당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사건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보존 조치가 시작되고 과학수사요원의 현장감식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줄이고 사건해결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활동 단계이다.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듯이 범죄현장에서는 유형, 무형의 범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용의주도한 계획적인 범죄라 할지라도 범인은 불안과 초조로 인해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경찰관이면 누구든지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명심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02년 9월 27일자 중앙 일간지에는 '개구리소년의 비극(중앙), 개구리소년 수사예단 말라(국민일보), 개구리소년 두 번 실종 안되게(조선), 유골로 돌아온 개구리소년들(한국), 개구리소년과 풀리지 않은 의문(한겨레), 개구리소년 선입관 수사(동아)'란 제목의 사설이 보도되었다. 이는 1991년 3월 26일 실종된 대구 성서 초등학생들이 11년 반만인 2002년 9월 26일 유골로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중앙 일간지에 실린 비판성 보도기사이다. 즉,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수사에 있어서 기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변사체 현장에서 경찰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변사체 현장에서 경찰관의 현장 초동조치는 피해자를 밝히고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되는 중요한 경찰활동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보도 내용이기도 하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현장 초동조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이 변사체 현장에서 부주의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게 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완벽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관 개개인의 변사체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능력이 사인 및 범죄규명의 결정적인 열쇠임을 감안할 때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이 현장 초동조치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변사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지구대 경찰관과 변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를 대상으로 의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변사사건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그 실태가 정확히 분석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변사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변사체 통계는 미미한 일반적인 통계밖에 없어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변사체 발생실태를 정확히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통계화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부검 관련 사항의 문제점도 도출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경북지역 변사체 발생추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Ⅱ. 재료와 방법

본 연구는 경북도내에 근무하는 경찰관 5,666명 중 18.8%(899명)인 수사경찰 가운데 11%인 수사형사 100명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2,762명 중 11%인 300명을 대상으로 변사현장 초동조치 의식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은 길잡이 과학수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형을 발췌하여 3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표 1). 2005년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사건현장 조치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내용.

항목	질 문
1	귀하의 계급은 ?
2	귀하의 경찰근무 경력은 ?
3	귀하의 수사경찰 근무경력은 ?
4	귀하의 근무지는 ?
5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는 ?
6	귀하는 경찰관 임용 후 현재까지 변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가 ?
7	최초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도착한 시간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가 ?
8	범죄현장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의 인적사항(착의)이나, 차량의 번호, 이동방향 등은 기록하는가 ?
9	현장 접근 시 현장주변에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2차 현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은 없는가 ?
10	현장 진입 전 위험상황의 지속여부와 안전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진입할 필요성은 ?
11	범죄상황의 종료가 확인될 때까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성은 없는가 ?
12	범죄현장 주변지역 전체를 관찰, 위험물질, 무기류,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 존재여부를 소방, 군 등 전문기관에 합동점검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
13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의료조치가 필요한지 생존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
14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피해자와 꼭 동행한다고 생각하는가 ?
15	구급대원이 현장 훼손 또는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능한 한 구급요원 옆에 대기하며 관찰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
16	구급요원이 증거물과 접촉을 피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 이동상황 및 구급요원에 의한 현장변경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
17	구급요원이 응급조치를 위해 흔적이나 다른 물적 증거를 없애지 않도록 하고, 구급물품을 현장에 남겨두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가 ?
18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이름, 소속, 기관명, 연락처, 피해자를 후송할 병원 등을 꼭 파악할 필요는 없는가 ?
19	피해자가 후송되는 병원까지 동행하며 진술하는 내용 및 상황 등을 기록하거나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은 없는가 ?
20	현장보존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물적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
21	119 등 구급요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훼손한 사례는 있었는가 ?
22	피해자의 가족, 친지 및 군중, 지원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신원확인을 하여야 하는가 ?
23	신문, 방송기자 등이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 현장출입을 통제하는가 ?
24	경찰 통제선을 설정할 경우에는 현장의 핵심지점 확인 후 외곽으로 확산하여 되도록 광범위하게 하여야 하는가 ?
25	경찰 통제선은 벽, 방실, 문 등 구조물을 이용하여 테잎, 줄 등으로 물리적 통제선을 설정하여야 하는가 ?
26	범죄현장에 모든 출입자 통제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증거물은 보존, 보호하여야 하며, 위치가 이동된 피해자 또는 물체의 원래위치를 꼭 기록하여야 하는가 ?
27	사건 수사책임자에게 현장 통제권을 이관할 시 상황설명, 현장 출입자 기록을 인계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잔류하여야 하는가 ?
28	사람의 위치, 인상착의, 상태 및 물건의 위치, 모양, 상태 등을 관찰자의 의견 및 현장관찰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가 ?
29	범죄현장에 최초 도착하여 기후, 조명, 구조물, 냄새, 색깔, 가구, 소지품, 전기제품 등의 상태 및 변화 등의 상황을 기록할 필요성은 있는가 ?
30	범죄현장의 목격자, 피해자 및 용의자의 개인정보, 진술내용은 모두 기록하여야 하는가 ?
31	범죄현장에서의 임무수행 내용 및 누가 했는지와 출입한 장소, 시간 등 자신 및 타인의 행동 등은 기록할 필요성은 없는가 ?
32	지금 이 순간 변사사건 현장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
33	변사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는가 ? 백골 사체가 있고 현장에 아무런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을 때 시신을 수습할 필요성이 있는가 ?
34	변사체를 보았을 때 부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
35	사체를 인도시(익사 등 사인이 명확한 경우)까지 얼마나 소요되었나 ?
36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

경찰의 현장 임장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 있는 변사체 현장 임장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변사 현장에서 경찰은 실제 변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점이 상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변사체 발생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껏 국내에는 변사체에 대한 통계는 미비하고 일반적인 통계밖에 없어 더욱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을 느껴 우선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변사체 발생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자료로 만드는 것은 향후 경북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만이라도 변사체 처리 과정에서 예방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찾아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수립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 변사체 발생실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되는 범죄분석 통계를 인용하여 연도별, 유형별로 개략적으로 분석하였고, 경북지역의 변사체 발생현황은 지난 5년간 경북도내 24개 경찰서에서 취급한 변사체 발생처리 실태를 경찰서 과학수사요원 등의 도움을 얻어 변사유형, 현황, 사인규명 등 22개 유형으로 자세하게 분류, 분석하여 통계화하였다.

Ⅲ. 결 과

1. 설문에 응한 자 구성

100명이 응답한 수사형사의 계급은 순경 21%, 경장 48%, 경사 30%, 경위 1%이며, 경찰근무경력은 3년 이하 3%, 3～5년 2%, 5～10년 36%, 10～15년 41%, 15년 이상 18%이고, 수사경찰 근무경력은 1년 이하 17%, 5년 이하 55%, 10년 이하가 28%이며, 근무지는 1급지 경찰서가 22%, 2급지 경찰서 23%, 3급지 경찰서가 55%이었다. 경찰임용 후 변사체를 처리한 건수에 대한 물음에는 재직 기간 동안 21건 이상이 64%로 가장 많았고, 10건 이하가 18%, 11～20건이 16%로 설문에 응한 수사경찰관은 모두가 변사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이 응답한 지구대 경찰관의 계급은 순경 26%(78명), 경장 36.7%(110명), 경사 37%(111명), 경위 0.3%(1명)이고, 경찰근무 경력은 3년 이하가 12%(36명), 3～5년이 3%(9명), 5～10년과 10～15년이 각 25.7%(77명), 15년 이상이 33.7%(101명)이며, 수사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경찰관이 61%(183명)이고, 1년 이하가 12%(36명), 5년 이하가 19%(57명), 10년 이하가 8%(24명)이며, 근무지는 1급지 경찰서가 31.3%(94명), 2급지 경찰서 32.3%(97명), 3급지 경찰서가 36.3%(109명)이고, 경찰관 임용 후 변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5%(15명), 10건 이하가 17.3%(52명), 11～20건이 26.3%(79건), 21건 이상이 51.3%(154명)로 응답한 대다수 경찰관이 변사체 처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체적 설문항목에 대한 결과 분석

37개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모두 소개하지 못하고 비슷한 유형의 항목 가운데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소개함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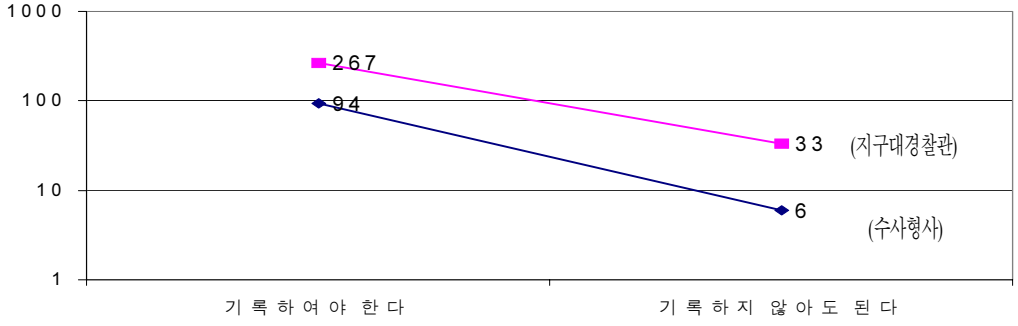

그림 1. 질문. 범죄현장 도착시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가. (단위 : 명)

그림 1에서 최초 범죄현장에 도착하여 도착한 시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수사형사는 기록하여야 한다 94%(94명),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6명)로 나타났고, 지구대 경찰관은 기록하여야 한다 89%(267명),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11%(33명)로 10% 내외의 경찰관이 현장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현장실무 경험이 적은 신임경찰관들이 신고접수 시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거리를 감안하여 도착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 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현장 접근시 현장주변에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2차 현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형사는 필요성이 있다 66%(66명), 필요 없다 34%(34명), 지구대 경찰관은 필요성이 있다 78.6%(236명), 필요 없다 20.7%(62명)로 나타나 지구대 경찰관과 수사형사 공히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70% 내외를 나타내고 있으나, 필요 없다는 답변이 지구대보다 수사형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사형사는 먼저 도착해 있는 지구대 경찰관의 선 조치에 의존하고 2차 상황은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진입 전 위험상황의 지속여부와 안전에 대한 확인 후 진입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형사와 지구대 경찰관 공히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이 60% 내외이며,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이 30%대를 나타내고 있어 위험상황에 대하여 공히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현장 주변지역 전체를 관찰, 위험물질, 무기류,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 존재여부를 소방, 군 등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수사형사 85%(85명), 지구대 경찰관 86.7%(260명)로 80%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수사형사와 지구대 경찰관 공히 2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범죄현장에 도착한 시점에서 변사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절히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을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생존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형사 97%(97명), 지구대 경찰관 92.9%(279명)가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소수의 경찰관들은 응급조치는 전문가인 119구급대원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여 피해자에 대한 섣부른 응급 조치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교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급대원이 현장훼손 또는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능한 한 구급대원 옆에 대기하며 관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수사형사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대답이 92%(92명)이며, 지구대 경찰관은 94.7%(284명)가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119 구급대원들의 활동에 의해 현장훼손이나 변경을 할 가능성에 대비함을 알 수 있었으나, 6~8%의 경찰관들이 구급대원들의 현장훼손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신임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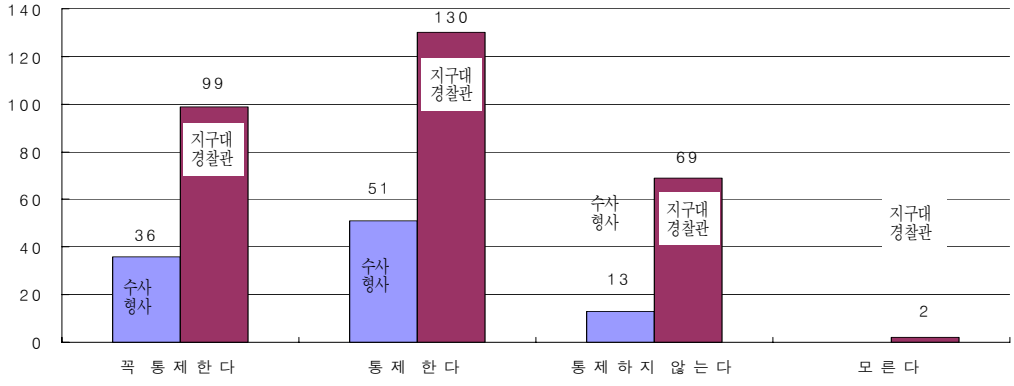

그림 2. 질문. 신문, 방송기자 등이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 통제를 하여야 하는가. (단위 : 명)

피해자 후송 병원까지 동행하며 진술 내용, 상황을 기록하거나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형사는 69%(69명), 지구대 경찰관은 67.7%(203명)이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여 경찰관들이 부상당한 범죄 피해자로부터 범죄의 상황을 파악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사형사, 지구대 경찰관 공히,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신속한 후송과 현장보존에 치중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차후에 확인하여도 되는 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물적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형사는 99%(99명), 지구대 경찰관은 98%(294명)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장 통제 및 증거훼손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범인검거에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9 등 구급요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 현장을 훼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형사의 57%(57명), 지구대 경찰관 54.7%(164명) 등 절반이 넘는 경찰관이 구급요원에 의한 훼손 사례가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수사형사 36명, 지구대 경찰관 84명이 1회 이상 훼손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5회 이상의 훼손도 14~37명이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구급대원에 의한 현장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동안 119구급대원이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서에 대한 협조와 강의 등으로 훼손실태를 알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대책보다 더욱 세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방송기자 등이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통제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이 수사형사는 87%(87명), 지구대 경찰관은 77%(229명)이며,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수사형사 13%(13명), 지구대 경찰관 23%(69명)으로 나타나, 신문, 방송기자 등의 범죄현장 출입제한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현장 출입통제 문제가 대두된 바를 거울삼아 강력 사건 및 사회이목집중 사건 발생 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현장 출입자 통제 및 인적사항 기록, 증거물 보존, 보호하고 위치가 이동된 피해자, 물체는 원래위치를 꼭 기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형사, 지구대 경찰관 모두가 98% 이상이 기록하여야 한다고 답하여 범죄현장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2% 정도가 기록해야 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임 경찰관 가운데 일부는 현장 변경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책임자에게 현장통제권 이관 시 상황설명, 출입자 기록을 인계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잔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수사형사 91%(91명), 지구대 경찰관 90.6%(272명)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나 10%에 가까운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신임 경찰관의 현장실무 경험이 적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람의 위치, 인상착의, 상태 및 물건의 위치, 모양, 상태 등을 관찰자의 의견 및 현장관찰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수사형사 98%(98명), 지구대 경찰관 98.7%(296명)이며, 범죄현장에 최초 도착하여 기후, 조명, 구조물, 냄새, 가구, 소지품, 전기제품 등 상태, 변화 등의 상황을 기록할 필요성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형사 97%(97명), 지구대 경찰관 96.9%(291명)가 기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여 현장 상태의 변화에 대한 기록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극히 일부 경력이 짧은 신임경찰관에 의한 미숙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범죄현장의 목격자, 피해자, 용의자의 개인정보, 진술내용은 모두 기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사형사 99%(99 명), 지구대 경찰관 97.7%(293명)가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고 답하였고, 범죄현장에서 임무수행 내용, 누가 했는지, 출입장소, 시간 등 자신과 타인의 행동 등은 기록할 필요성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을 수사형사 68%(68명), 지구대 경찰관 66.4%(199명)로 나타나 경찰관 자신의 범죄현장 활동기록에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신임경찰관 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통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변사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형사는 67%(67명)가 자신 있다, 33%(33명)가 그저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지구대 경찰관은 63.7%(191명)가 자신 있다, 36%(109명)가 그저 그렇다로 답하여 아직까지 35% 내외의 경찰관들이 변사사건 처리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설문 조사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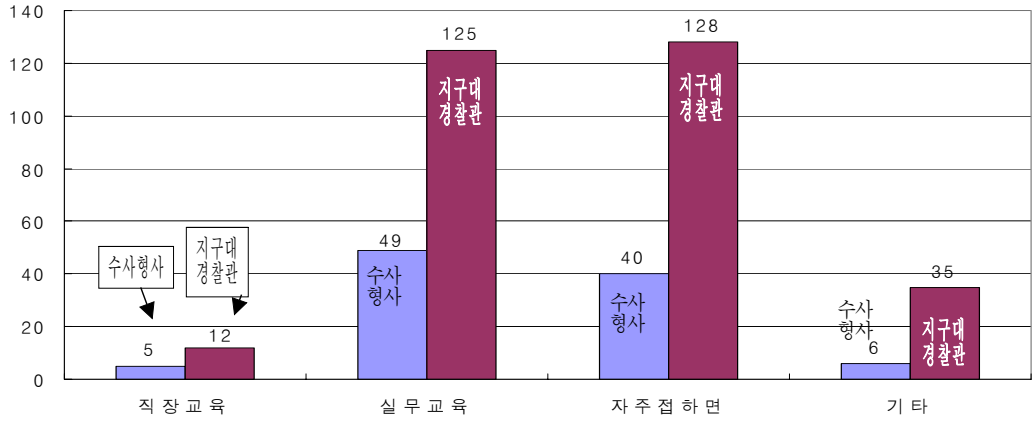

그림 3. 질문. 변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단위 명)

변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수사형사는 49%(49명)가 실무교육, 40%(40명)가 변사사건을 자주 접하면으로, 직장교육 5%(5명)로 나타났고, 지구대 경찰관은 변사체를 자주 접하면이 42.7%(128명), 실무교육이 41.7%(125명), 실무지침서 배부 등이 11.7%(35명)가 있었고, 직장교육은 수사형사와 비슷한 4%(12명)로 설문되어 현장 실습위주의 실무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백골 사체가 있고 아무런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시신을 수습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형사는 77%(77명)가 수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지구대 경찰관 48.3%(126명)만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수사형사 23%, 지구대 경찰관 51.7%는 없다 또는 모른다고 답하여 경찰관들이 백골 사체에 대한 수습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백골사체에 대한 변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변사체를 보았을 때 부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능력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부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다는 답변이 수사형사는 58%(58명), 지구대 경찰관은 42%(126명)이나 '없다'와 '모르겠다'는 답변이 수사형사 42%(42명), 지구대 경찰관 58%(174명)로 나타나 경찰관의 법의학 기초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신임 경찰관 교육과정과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훈련, 현장훈련, 직무상훈련 등으로 불리는데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로부터 대면지도, 개별지도, 훈련지도를 통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OJT는 실무상의 교육훈련으로서 기회교육이며 체감교육이다)에서 법의학 기초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망 원인이 명백할 때 사체를 인도하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수사형사는 10시간이 39%(39명)로 가장 많았고, 5시간 29%(29명), 7시간과 24시간 이상이 16%(16명)로 나타났으며, 지구대 경찰관은 10시간이 36.3%(109명)로 수사형사와 같이 가장 많았고, 5시간이 30.7%(92명), 7시간이 16.7%(50명), 24시간 이상이 16.3%(49명)순으로 나타나 사망원인이 밝혀진 변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률상 변사체에 대한 경찰 단독처리가 불가능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수사 구조의 이중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의 마지막 질문인 현장초동 조치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응답자가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 수사형사는 법의학과 현장보존 및 증거물 채증 요령 등 범죄현장에 대한 부분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구대 경찰관은 각 유형별 범죄현장에 대한 최초 출동에서 종료 시까지의 방법을 사례위주의 교육을 원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수사형사의 경우 범인 검거를 위해 범죄현장과 변사체에서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교육을 원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구대 경찰관은 범인 검거보다는 범죄현장을 유형별로 잘 보존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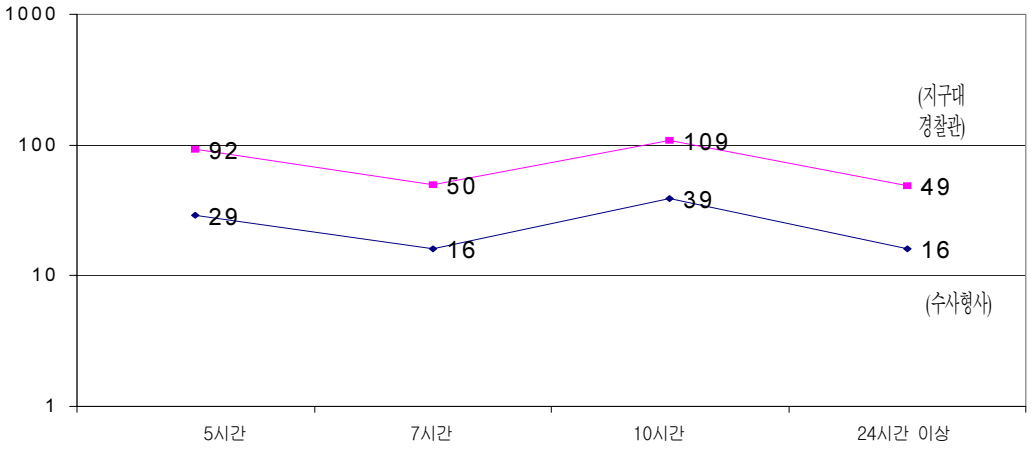

그림 4. 질문. 사망원인이 명백할 때 사체를 인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위 : 명)

3. 전국 변사체 발생 실태

우리나라 전체의 연간 변사사건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발생현황을 자·타살과 과실사, 재해사의 유형으로 살펴보았으며, 통계자료는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 의한 통계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의 연간 전국 변사체 발생은 27,709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업무상 자기과실 및 타인과실 등 과실사가 전체의 53.1%(14,701건)로 변사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자살이 42.0%(11,650건)를 나타내다가, 2001년 들어 전체의 변사체는 5.8%(1,610건)가 줄어든 26,099명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과실사가 2000년에 비해 2,088건인 7.4%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과실사 감소 중 교통사고가 29.5 %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자살률은 2000년에 비해 5.5%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단으로는 음독(28.3%), 총포(55.6%), 도검(16.9%), 추락(15.9%), 의사(6.6%) 순으로 2000년에 비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에는 변사체 발생률이 2001년에 비해 1.0%인 270건이 감소했으며, 2000년에 비해서는 6.8%인 1,880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위 2001년의 원인과 비슷하였으나, 특이할 만한 것은 2002. 4월 중국 민항기 김해공항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과실사가 170건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2003년은 2002년에 비해 전체 변사체 발생건수는 330건인 1.3%, 2001년에 비해 0.2%인 60건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1,550건인 5.6%가 감소하였으며, 2002년에 비해 변사체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의사 23.5%(732건), 음독 14.7%(526건) 순이고 특히 소사가 42.8%(249건) 증가한 것은 2003. 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4년은 2003년 2002년 2001년에 비해서는 1.5%, 2.8%, 1.7%씩 각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타살이 21.2%(238건), 과실사가 17.4%(2,562건)나 감소한 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나, 자살은 2000년에 비해 오히려 14.1%(1,643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전국 변사체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로는 매년 자살과 과실사가 전체 변사 발생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자살은 2000년부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타살은 자살과 반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반면,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이 대형사건이 변사사건 발생원인별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망자 숫자가 2001년에도 2000년도에 비해 32.3%(1,985건)를 비롯, 2003·2004년도에는 20% 내외의 큰 폭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과 국토관리청 등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 5년간 전국 변사체 발생 현황. (경찰청 : 범죄분석자료, 단위 : 명)

구분		계	교사	의사	익사	도검	총포	폭발물	음독	기차	자동차	비행기	가스중독	추락	소사	전기	기타
계	2000년	27,709	234	2,929	3,812	503	83	32	2,865	206	6,148		229	2,186	645	135	9,948
	2001년	26,099	151	3,129	1,263	373	29	26	3,427	341	4,163		161	2,503	544	145	9,844
	2002년	25,829	215	3,220	1,215	385	48	134	3,657	211	4,000	177	130	2,504	581	121	9,231
	2003년	26,159	225	3,945	1,200	371	47	76	4,271	226	3,230	18	129	3,080	830	103	8,408
	2004년	26,540	149	4,194	1,250	379	27	27	4,084	200	2,695		99	2,925	523	110	9,878
자살	2000년	11,650	98	2,895	723	59	9	6	2,619	84	141		52	1,334	178	17	3,435
	2001년	12,288	71	3,085	454	69	14	4	3,360	66	9		38	1,546	122	4	3,446
	2002년	13,055	105	3,103	460	87	14	6	3,575	77	18	7	43	1,527	168	5	3,860
	2003년	13,005	140	3,835	510	113	27	53	4,101	100	9		45	1,930	163	3	1,976
	2004년	13,293	55	4,136	562	88	8	3	3,988	113	11		46	1,807	140	3	2,333
타살	2000년	1,123	108	4	10	285	9		24		132			20	37	5	489
	2001년	929	80	15	15	298	10		19	1	9		5	18	34		425
	2002년	882	110	8	5	262	9	2	17		6			12	38		413
	2003년	872	84	10	8	250	10	3	10	1	7		2	10	69		408
	2004년	885	93	15	9	285	13		9	1	9			20	47		384
과실사	2000년	14,701	28		818	159	65	36	221	122	5,874		158	826	286	112	5,976
	2001년	12,613		27	775	6	5	20	48	274	4,144		100	937	219	127	5,929
	2002년	11,509		109	614	36	25	125	65	134	3,975	170	82	963	229	97	4,885
	2003년	11,808	1	100	624	8	10	18	160	125	3,214	18	77	1,140	260	99	5,954
	2004년	12,139	1	43	659	6	6	24	87	86	2,665		46	1,084	218	104	7,110
재해사	2000년	235			15				1		1		19	6	144	1	4,823
	2001년	269			19			2			1		18	2	169	14	44
	2002년	383			136			1			1		5	2	146	19	73
	2003년	474			58			2	226				5		338	1	70
	2004년	223			20						10		7	14	118	3	51

4. 경북지역 변사사건 발생 추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체를 경북도내 24개 경찰서 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에 임장하여 초동조치를 취한 자료를 근거로 변사유형, 타살 동기, 자살 원인, 자살 방법, 변사 발생월별, 발생 요일, 발생 또는 발견 시간, 발생 또는 발견 장소, 변사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발생 후 발견되기까지 시간, 신원확인 여부, 부・검안여부, 부검 소요일, 부검기관, 부검 의사, 부검 결과 사인, 담당검사의 현장 임장 지휘여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부검비 지급실태 등 22개 항목으로 나누어 세밀히 분석하였다.

가. 변사체 발생분석

먼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체수의 개략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1,842건으로 2002년까지는 전국 발생평균의 6.8%인 1,800건대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3년에는 전국 26,159건의 8.2%인 2,150건으로 2000년에 비해 16.7%(308건)가 증가한 반면, 2004년에는 전국 26,540건의 7.8%인 2,079건으로 전년에 비해 3.3%인 71건이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에 변사체 발생이 증가한 것은 자살이 838건으로 2000년에 비해 35.2%(218건), 타살이 78건으로 73.3%(33건), 과실・재해사가 844건으로 19.2%(13건)가 각 증가한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사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전체 변사자 중 과실・재해사가 38.4%, 자살이 33.7%, 교통사고가 22.9%, 원인불상이 2.6%, 타살이 2.4%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2002년까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다가 2003년에는 200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6.7%나 증가하였고, 자살이 38.9%, 범죄에 기인된 타살도 73.3%나 증가하였고, 2004년은 200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3.3%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8.5%, 과

실·재해사는 11.8%, 범죄에 기인된 타살이 10.3% 감소한 것이 특이하다. 이어서 앞서 제시한 22개 항목을 차례로 나누어 분석 설명하고자 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와 관련된 타살의 연도별 발생실태를 보면, 2001년도에 65건 발생으로 2000년에 비해 44.4%(20건)가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78건으로 2000년에 비해 무려 73.3%(33건)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 10.3%(8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에는 대체로 변사사건이 증가한 유형이 많은 점이 특이하다.

표 4에서 보듯이 동기별로는 2000년에는 폭행에 의한 타살이 16건으로 전체의 35.6%, 가정불화가 24.4%, 이욕(利慾)에 의한 타살이 13.3% 순으로 나타나던 것이 2003년에는 분노에 의한 타살이 23.1%, 폭행이 17.9%, 가정불화, 이욕이 각 14.1%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수에 의한 타살이 6.4%나 나타나고 있어 보복심리가 범죄로까지 이어짐을 볼 수 있다. 자살은 표 5와 같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600～700여 건이던 것이 2003년 들어 838건으로 2000년에 비해 35.2%(218건)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4년에 700여 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동기를 보면 2000년에 비관이나 가정불화 등에 의한 원인이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였던 반면, 2003년 들어 비관, 병고, 빈곤, 가정불화 등에 의한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병고에 의한 자살이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2000년에 비해 75.1%(136건)나 증가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2003년에 비해 비관이나 빈곤, 가정불화, 병고 등에 의한 자살은 조금씩 줄어든 반면, 염세에 의한 자살이 422.7%(93건)나 증가한 것과 낙망에 의한 자살도 58.8%(10건)가 증가한 것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 방법을 보면, 표 6에서 보듯이 2003년에는 자신의 목을 매는 방법을 선택한 유형이 26.8%이며 약물 등에 의한 중독에 의한 방법이 24.6%로 자살방법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손상, 추락, 익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부터의 질식사의 매년 발생 건수는 전체의 27% 내외인 230여 건에 달하고('02년은 214건) 2004년 들어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익사는 2000년과 2001년에 40건대의 수치를 보이다가 2002년에 100% 가량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2003년부터는 다시 30～40건대를 유지하고 있고, 손상사와 중독사는 2003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한 것은 재해사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익사가 2003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것은 2002년 익사가 급증함에 따라 익사방지를 위한 경찰의 다각적인 활동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경북지역 변사 유형별 현황.

구분	계	자살	타살	과실사 재해사	교통사고	불상
00년	1,842	620	45	708	421	48
01년	1,813	677	65	661	351	59
02년	1,849	707	61	646	335	100
03년	2,150	838	78	844	331	59
04년	2,079	767	70	744	337	161

(자료 : 경북경찰청, 범죄분석 통계, 단위 : 명)

표 4. 경북지역 타살 동기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원한	이욕	복수	분노	가정불화	정신이상	폭행	불상
00년	45	2	6	1	4	11	4	16	1
01년	65	4	7		19	10	3	11	11
02년	61	5	8		18	10	2	12	6
03년	78	7	11	5	18	11	7	14	5
04년	70	5	7	1	14	16	6	18	3

표 5. 경북지역 자살 원인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	빈곤	비관	낙망	치정	실연	가정불화	사업실패	불륜	불상
00년	620	49	45	35	62	309	9	2	5	68	16	2	18
01년	677	59	74	41	56	311	42	6	8	53	15	4	8
02년	707	63	111	22	50	329	18	8	6	63	20	1	16
03년	838	55	181	22	92	362	17	2	6	69	21	2	9
04년	767	48	153	115	69	240	27	2	8	61	23	4	17

표 6. 경북지역 자살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질식사	익사	동사	감전	방화	손상사	중독사	추락사	불상
00년	620	239	46			4	46	164	9	112
01년	677	233	48		2	3	34	179	25	153
02년	707	214	94		2	5	42	161	13	176
03년	838	225	33		1	8	80	206	37	248
04년	767	248	40	1		10	62	207	29	170

표 7. 경북지역 발생월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년	1,842	131	132	143	158	160	129	207	197	156	141	152	136
01년	1,813	147	136	169	154	160	158	180	182	151	150	117	109
02년	1,849	109	116	143	186	164	167	163	188	183	140	146	144
03년	2,150	131	143	167	169	201	184	214	233	208	183	153	164
04년	2,079	142	143	198	154	204	199	231	194	167	150	163	134

표 8. 경북지역 발생 요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0년	1,842	267	243	281	270	241	263	277
01년	1,813	256	243	249	252	260	295	258
02년	1,849	305	247	220	230	253	324	270
03년	2,150	317	280	288	330	276	353	306
04년	2,079	290	284	303	281	267	312	342

표 9. 경북지역 발생(발견) 시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6시	6~12시	12~18시	18~24시
00년	1,842	313	477	575	477
01년	1,813	260	444	581	528
02년	1,849	251	491	630	477
03년	2,150	371	578	639	562
04년	2,079	302	595	679	503

표 7에서와 같이 변사체가 발생하는 것을 월별로 보면, 2000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100건대를 유지하다가 7월에 207건으로 6월에 비해 60.5%(78건)가 증가하였다가 8월부터 12월까지 다시 1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00여 건대의 분포로 되어 있으나, 2003년, 2004년 7, 8월에는 200건대의 발생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7, 8월의 휴가철 익사사고 다발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생요일별로는 표 8과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50건 이상 발생한 요일을 보면 2000년에는 화요일은 15.3%, 토요일은 15.0%, 수요일 14.7%로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일요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월요일에는 240건대가, 2003년에서 2004년은 280건대가 발생 변동의 큰 폭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9의 자살 발생(발견)시간대별로 볼 때에는 낮 시간대인, 즉 오전에는 24.5%이고 오후에는 3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벽시간대인 01:00～06:00까지는 전체적인 발생건수의 13～17%대의 비율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초저녁 때인 18:00～24:00까지가 24～29%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변사의 발생은 오후와 초저녁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변사사건이 발생하는 주된 장소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는 주택・아파트가 39.6%, 도로변(교통사고) 24.7%, 야산이 8%, 강변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러한 양상을 보이다가 2003년에는 창고・공장에서의 변사율이 전년에 비해 18.8%(18건)나 증가하여 또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재해사와 무관치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1은 변사자의 남・여 성비로 남자가 여자보다 매년 3배 가까운 수가 많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변사자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된 2003년의 경우도 남자가 여자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2의 현황과 같이 변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40대로 평균 21.5%(420여 건)의 변사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15.4%(300건대)를, 30대가 10.7%(200건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70대의 변사율도 30대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30대에서 70대까지 변사자의 수가 각 300건대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으며, 2004년에는 30대와 70대는 각 200건대로 줄어들었으나, 4～60대는 각 21%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기에 있는 연령대의 변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10세 이하와 10대의 경우도 평균 5～70건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으나, 교통사고나 익사 등 안전사고에 기인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변사자의 직업은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히는 공무원이 1～1.5%로서 매년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에도 평균 4.3%로 나타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평균 35%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노동자가 13～15%를, 그 뒤를 자영업을 하는 자의 자살률도 1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회사원과 주부의 변사율도 전체 변사건수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표 14와 같이 변사자의 학력은 고졸이 59.4%, 초등학교 졸업이 22.2%, 중졸이 19.2%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도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사체의 발견시간은 표 15와 같이 발생즉시 발견된 경우, 즉 1일 이내가 2000년 86.3%, 2001년 83.9%, 2002년 82.2%, 2003년 84.1%, 2004년 86.6%이며, 1일에서 10일 이내에 발견되어 사인을 비교적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변사체는 8.6～12%로 각 연도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은 변사체도 각 연도별 1%(17건)에서 2%(38건)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사망의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 변사체는 2000년에 0.3%(7건)이었던 것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년간은 0.6%(13건)으로 소폭 증가되었고, 2004년에는 1%(22건)로 크게 증가한 추세이다.

변사자의 신원확인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표 16과 같이 전체 변사건수 대비 발생 또는 발견 즉시 신원이 확인된 비율은 2000년 99.1%, 2001년 99.3%, 2002년 99.0%, 2003년 99.3%, 2004년 99.2%로 나타났다. 변사자의 신원이 전부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변사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기간이 지나 변사체가 백골, 부패되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지문자료 누락 또는 변사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 10. 경북지역 발생(발견)장소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주택 아파트	창고 공장	점포	강변	야산	공공 장소	도로변	숙박 업소	기타
00년	1,842	730	62	54	133	147	56	455	47	158
01년	1,813	745	91	39	136	125	54	378	69	176
02년	1,849	791	96	44	137	147	62	364	58	150
03년	2,150	949	114	50	164	174	46	674	82	197
04년	2,079	888	92	29	148	189	99	336	73	225

표 11. 경북지역 변사자 성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1,842	1,813	1,849	2,150	2,079
남	1,348	1,360	1,376	1,565	1,545
여	494	453	473	585	534

표 12. 경북지역 변사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0세 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00년	1,842	51	73	165	293	422	342	287	209
01년	1,813	57	76	159	299	421	326	261	214
02년	1,849	68	57	148	263	366	377	336	234
03년	2,150	53	65	174	328	450	375	404	301
04년	2,079	55	47	132	293	439	414	400	299

표 13. 경북지역 변사자 직업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공무원	회사원	주부	노동자	학생	무직	자영업	종업원	불상
00년	1,842	19	191	162	293	101	652	229	68	127
01년	1,813	24	183	172	313	86	578	186	93	178
02년	1,849	31	173	177	331	67	656	172	93	149
03년	2,150	17	250	201	338	84	747	219	113	181
04년	2,079	32	175	179	283	84	769	274	115	168

표 14. 경북지역 변사자 학력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무학	초재	초졸	중재	중졸	고재	고졸	대제	대졸 이상
00년	1,842	366	27	385	16	400	34	506	17	101
01년	1,813	383	19	405	11	356	27	488	25	99
02년	1,849	373	21	442	20	341	18	538	17	79
03년	2,150	456	20	461	8	412	11	645	27	110
04년	2,079	412	22	482	13	362	16	610	43	119

표 15. 경북지역 발생 후 발견되기까지 기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일 이내	1~10일	11~20일	21~30일	1개월 이상	불상
00년	1,842	1,590	203	18	6	18	7
01년	1,813	1,521	231	20	11	17	13
02년	1,849	1,520	205	43	30	38	13
03년	2,150	1,809	219	51	21	37	13
04년	2,079	1,801	179	35	10	32	22

표 16. 경북지역 신원확인 여부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신원확인	백골	부패	단서불발견
00년	1,842	1,826	5	6	5
01년	1,813	1,801	5	4	3
02년	1,849	1,831	9	7	2
03년	2,150	2,135	5	5	5
04년	2,079	2,062	13	2	2

4. 변사체 사인규명을 위한 관련 현황

표 17에 의하면 변사체의 사인 규명을 위해 실시한 부검은 2000년에 9.7%, 2001년 12.4%, 2002년 14.3%, 2003년 14.4%, 2004년 12.5%로 전체 변사발생 건수에 비해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 또는 사법검시만 하는 변사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70% 수준으로 대다수의 변사체에 대해 검시만으로 처리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검시를 하지 않고 단순처리를 한 경우도 2000년 이후 14.8~18.4%로 부검을 하는 변사체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칫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18과 같이 2000년 이후 5년간 변사체 발견당일 부검을 한 경우는 2000년 10.7%, 2001년 24.4%, 2002년 17%, 2003년 19.7%, 2004년 9.7%로 전반적으로 20%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변사체를 1~2일간 영안실 냉장실 등에 보관한 뒤 부검을 실시한 비율이 1일 후는 2000년이 51.1%로 가장 높고, 2003년이 3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일 후는 2001년이 22.7%로 가장 낮고 2004년이 3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검의 실효를 최대로 거둘 수 있는 변사발생 또는 발견 당일의 부검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며, 4일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에 부검을 한 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넓은 경북지역의 실정과 부검의 부족, 공휴일, 검사지휘 관계 등으로 늦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검 기관별로 보면 표 19와 같이 전문기관인 국과수와 법의학교실에서 부검한 비율은 2000년에는 국과수 9.6%, 경북대 법의학교실 28.1%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국과수 40.9%로 증가한 반면 경북대 법의학교실은 33.3%로서 매년 국과수 부검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의학교실에서의 부검은 매년 감소 내지 둔화 추세이다. 이와 반면, 일반병원 등에서의 부검은 2000년 62.4%, 2001년 54.2%로 전체 부검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37%, 2003년에 33.9%, 2004년에 25.9%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국과수 및 경북대 법의학팀 등 부검 전문의의 부검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표 20의 법의학과 해부병리 등 부검의에 의한 부검 비율은 2000년 75.8%, 2001년 75.1%, 2002년 88.7%, 2003년 94.8%, 2004년 94.6%로 2002년부터는 대부분의 부검이 법의학과 해부병리 전문의(경북대 3명, 안동병원 1명, 포항선리병원 1명, 포항 동국대병원 1명)가 부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으로는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손상사가 2000년에 19.7%, 2001년 24.9%, 2002년 21.9%, 2003년 24.5%, 2004년 25.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질식사는 2002년에 21.9%이던 것이 2003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독사의 경우는 2003년 40건으로 12.9%를 차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004년에는 11.2%로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원인이 불상인 경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5의 변사현장에 담당검

사가 임장 지휘여부는 2004년의 경우 자살사건이 11.7%이고 타살사건이 42.9%로 자살사건 발생 시 검사의 현장 임장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살의 경우에도 절반을 넘지 못한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14.3%에 그치고 있다. 2004년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현황으로는 그림 6과 같이 신청당일에 발부된 것이 전체의 76.1%이나 아직까지 23.9%가 영장신청 후 2일이 지나야 발부되는 등 신속한 부검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례절차 등의 지연을 가져와 국민불만의 요인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검비 지급 실태로는 표 22와 같이 2000년에 178건을 부검하였고 법의학교실과 일반병원 등에서 부검한 161건에 대하여는 부검비 40,2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에는 184건에 46,000,000원을, 2002년에는 169건에 42,250,000원을, 2003년에는 160건에 40,000,000원을, 2004년에는 138건에 34,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년 부검비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04년의 경우 15건에 3,73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부족한 부검비에 대하여는 차기 연도의 부검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등 부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경북지역 부·검안여부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1,842	1,813	1,849	2,150	2,079
검시	1,330	1,254	1,302	1,522	1,480
부검	178	225	265	310	259
단순처리	334	334	282	318	340

표 18. 경북지역 부검 소요일수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당일	1일 후	2일 후	3일 후	4일 이상
00년	178	19	91	53	14	1
01년	225	55	95	51	18	6
02년	265	45	132	68	17	3
03년	310	61	113	105	25	6
04년	259	25	114	102	16	2

표 19. 경북지역 부검기관별 부검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국과수	법의학교실	일반병원	기타
00년	178	17	50	90	21
01년	225	41	62	101	21
02년	265	96	71	86	12
03년	310	150	55	103	2
04년	259	106	86	66	1

표 20. 경북지역 부검의사별 부검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법의학	해부병리	내과	외과	기타
00년	178	67	68		22	21
01년	225	103	66		35	21
02년	265	167	68		14	16
03년	310	211	83	1	12	3
04년	259	192	53		13	1

표 21. 경북지역 부검결과 사망원인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질식사	익사	중독사	동사	감전사	화상사	손상사	불상	기타
00년	178	48	13	28	5	1	5	35	15	29
01년	225	34	18	32	3		10	56	31	41
02년	265	58	17	37	1	1	9	58	28	56
03년	310	51	20	40	1	2	28	76	38	54
04년	259	31	13	29	3	2	18	67	27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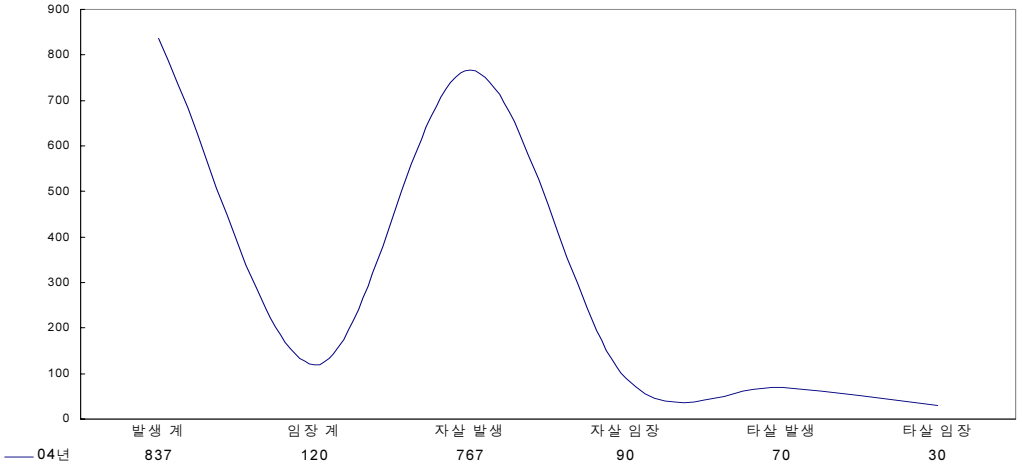

그림 5. 경북지역 담당검사 현장 임장 지휘여부별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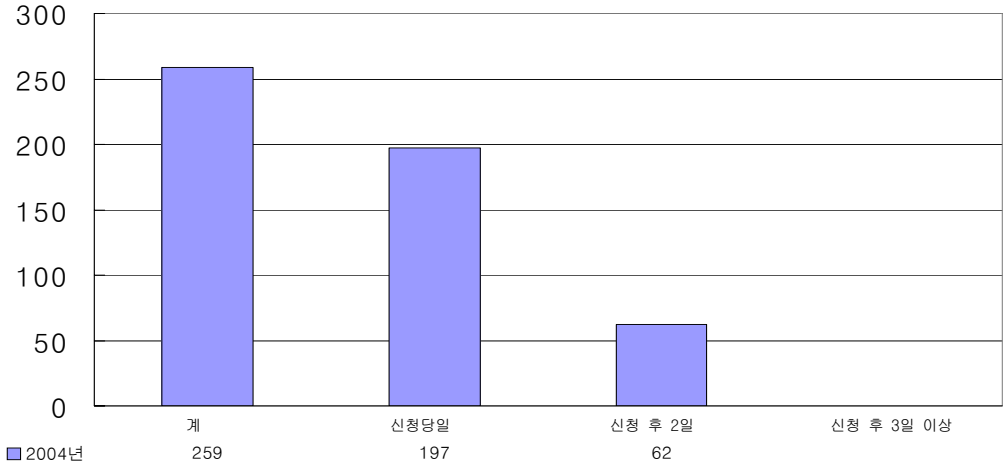

그림 6. 경북지역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 (단위 : 건)

표 22. 경북지역 부검비 지급실태 현황. (단위 : 원)

구분	검안		부검		미지급 건수	사유
	건 수	비 용	건 수	비 용		
00년	798	23,940,000	161	40,250,000	17	국과수 부검
01년	777	23,310,000	184	46,000,000	41	국과수 부검
02년	753	22,590,000	169	42,250,000	96	국과수 부검
03년	916	27,480,000	160	40,000,000	150	국과수 부검
04년	757	22,710,000	138	34,500,000	121	국과수 부검 106건 예산부족 15건 3,730,000원

Ⅳ. 고 찰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의 주민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들 개개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을 사고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일어난 사고와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여 조기 해결하는 것 또한 예방억제책의 방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변사체 현장에서 완벽한 초동조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경찰관 개개인이 변사체 처리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변사체 발생 실태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설문결과 나타난 바를 요약해 보면, 첫째, 변사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지구대 경찰관과 수사형사들이 범죄현장에 도착하여 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현장주변의 상황, 그리고 범죄의 지속 등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사체 현장에서 증거수집이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금보다 더 경찰의 현장감식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급대원에 의한 범죄현장 훼손에 대해서는 업무상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인 규명을 하지 못하거나 사인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거나 늦어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요구된다. 셋째, 신문, 방송기자 등의 현장 출입 요청 시 허용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통제선을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해 현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건의 오판으로 수사방향을 잘못 설정할 우려가 있고 사고현장에서의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출입 시 경찰의 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변사체 처리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이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초동조치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임경찰관 교육과정부터 실무 위주의 부단한 변사체 현장 초동 조치에 관한 현장실습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인이 명백한 변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데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16.3%를 차지하고 있어 유족들의 불평·불만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체 발생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특징을 보면, 먼저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돌발적인 대형사건·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고 살인 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5년 가운데 변사체가 가장 많이 발생된 해는 2003년도(2,150건)인데 그 중에서 자살과 재해사가 각 39%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 매년 자살과 재해사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게 하는 방안으로 종교 단체 등을 통해 자살방지 홍보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의 정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각 사업장에서의 더욱 강화된 안전시설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기도 한 부분이다. 7, 8월에 변사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름

철 익사사고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 소방 당국의 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 가량 많이 죽고 있으며 연령대는 40~5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가장 낮은 데 반하여 무직이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가장 많고 대졸 이상도 5%대나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해서 관련부처와 단체에서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변사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매년 0.8%로서 2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억울한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실태를 보면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듯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의사들을 일정기간 별도 법의학 교육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기도 하다. 한편,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 개정도 이루어져 의사와 현장에 임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검시권을 두도록 하여 신속한 검시(부검포함)가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불의의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과 그동안 다년간 경찰경험을 통해 체득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사체 발생예방 측면, 사인규명을 위한 측면과 경찰의 현장조치 능력배양을 위한 측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미흡하지만 간략하게 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변사체 발생예방 측면

가. 위 분석에서 보듯이 전체 변사사건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과실·재해사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물론이고 산업안전관리 공단, 소방 방재청이 주축이 되어 산업현장에서의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나. 매년 10% 이상씩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만의 활동에 의존하지 말고 국토 관리청,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도 시설개선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의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은 과속 등 교통사망사고 요인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면 더욱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자살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사회분위기(건전한 놀이문화, 경제적, 사회적 약자 보호 등)를 확산시켜야 한다.

라. 여름철 익사사고는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방지활동에 주력하는 등 테마별 변사사건 발생에 대한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인규명을 위한 측면

가. 부검의의 부족현상 해소

장기적으로는 부검과 관련된 법의학, 해부병리학과 인원을 증원하고 이들 학과를 전공한 의대생에게는 국과수 등 국가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 군 경력을 인정하여 주는 등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로 법의학 등 부검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부검의사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필요한 수의 의사들에게 별도 법의학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검안비 및 부대경비의 현실화

매년 발생하는 변사사건을 철저하게 분석, 관리하여 익년의 예산 편성 시 전년 변사사건의 검안 및 부검건수의 약 1.5배 가량의 부·검안비 예산을 편성하고, 부검에 필

요한 부대경비 또한 위 부검비 수준으로 편성하여 부·검안비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부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체제 제도화

위 설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행 우리 변사체 처리는 신고된 변사체와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에 대하여 사인규명이 필요한 변사체에 대해서만 부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억울한 죽음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사, 병사를 제외한 사인이 의심 있는 모든 변사체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규명으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부검의 양성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형사소송법 등 불합리한 관련 법령정비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검시의 주체가 검사가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검의 필요성 여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검시의사의 판단이 단순히 서류만으로 검시와 부검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보다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있는 경찰관과 검시의사의 판단으로 부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경찰의 현장조치 능력배양을 위한 측면

가. 신임교육과정 부단한 사례위주 교육실시

변사체 발생 시 현장에 최초 출동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어떻게 잘 보존하는가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나 범인검거, 변사의 유형 등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경찰의 현장조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지구대경찰관과 수사형사 등 전 경찰관에 대하여 신임교육에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신임순경교육과정은 24주(913시간)로 그 중 수사실무가 72시간임)에 배정된 시간을 2 배로 늘려 사례 및 실습위주의 교과과정을 수립 주기적 반복적 교육실시로 경찰의 현장조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나. 내실 있는 직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임교육 이후 현장조치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 교육을 위해서는 지구대 경찰관, 수사형사, 기타 부서 근무자 등 근무 부서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근무 부서별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무교육(과학수사기법과정 2주(76시간), 현장감식전문과정 3주(114시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엄격한 현장통제(폴리스라인)방안 구축

2005년 7월 7일 발생한 영국 지하철 테러폭발사고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현장에서는 신문, 방송기자 또는 관계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현장 통제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현장을 무단 출입할 수 없는 방안 구축 등 그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범죄현장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무단 출입 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자들도 과열경쟁으로 빚어지는 현장훼손 가능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함이 요구되고 있다.

라.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확산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변사자에 대한 사인규명을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윤리적 이유 등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검을 꺼리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만 경찰이 보다 정확한 변사체 처리가 가능하고 이는 곧 억울한 죽음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찰청. 2000년 - 2004년 범죄분석 1066p～1075p.
2. 인터넷. 통계청 KOSIS 온라인간행물 2003 사망원인 통계.
3. 경찰청. 2005년 경찰교육훈련 계획 136p, 152p, 309p.
4. 중앙경찰학교(2002. 11). 변사사건 처리 매뉴얼 3p～30p.

5. 경북지방경찰청(2004. 6. 2) 과학수사활동 철저 지시. 경북지방경찰청(2004. 7. 31). 현장감식 활동 철저 지시.
6. 김광훈. 강력사건에 있어서 현장감식의 역할에 대한 고찰. 국과수 년보 2002. 34권. 163p-170p
7. 곽정식, 채종민, 이상한 등. 사인확인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대한 법의학회(2002. 7. 31).
8. 경찰청. 길잡이 과학수사 (2002. 12. 10P～39P).
9.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메뉴얼 (2005. 4. 8p～20p, 30p).
10. 문국진. 최신법의학 (2002. 7. 15. 3P).

초 록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